

제안설명서

(3584.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☐ 의안번호 제3584호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☐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의2에 따라 조성되는 ‘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’의 계정을 공공시설등설치일반계정과 강북등발전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의 재원 구성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,
- 기금의 관리 운용 부서 변경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공간전략과장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,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6. 4.

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장 안 대 희